

문 의	정보고객지원국 출 원 과	과 장 이청일 사무관 김지혜	042-481-5192 042-481-3548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8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8월 9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특허청,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‘증명서류 제출제도’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,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.
 -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,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.
 -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,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.

□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,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.

○ 다만,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.

○ 또한,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아울러,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(서명자)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‘서명권한인정서(확인서)**’까지로 확대했다.

* 서명권한인정서(서명자) : 서명자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서면

* 서명권한확인서(대리인) : 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자가 서명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서면

□ 성윤모 특허청장은 “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, 제출서류도 ‘서명권한인정서(확인서)’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,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1.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개선 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김지혜 사무관(☎042-481-35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개선 계획

□ 현행

-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출원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

- ▶ 위임장의 서명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: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
- ▶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: 모든 절차(특허출원 등 일반절차, 특별수권* 포함)에 대하여 증명서류 제출 필요
 - * 특허법 제6조(대리권의 범위) 특허출원의 변경·포기·취하, 특허권의 포기,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, 신청의 취하, 청구의 취하,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, 심판청구, 복대리인의 선임

□ 개선

- ▶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인 경우 :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(현행과 동일)
- ▶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 아닌 경우 :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
 - 다만, 특별수권사항은 증명서류** 제출 필요

※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증서 제출 필요

**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(확인서)

□ 개선 전·후 비교

구분		현행	개선
서명자가 대표자 아닌 경우	출원 등 일반절차	< 제출 필요 > 공증서, 임명장, 업무분장, 홈페이지 캡처	< 제출 불필요 >
	특별수권		< 제출 간소화 >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(확인서)

□ 시행일 : '18. 8. 10(금).